



진안군 남·녀 의용소방대, 소외계층 위한 물품기탁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진안군 남·녀 의용소방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6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수소방서, 불만제로 민원청취관 지정제도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렴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불만제로 민원청취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원농기센터, 청년 4-H 신규 회원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경쟁력을 갖춘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청년 4-H 신규 회원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정기이사회

주요 안건 세입세출 결산·사업추진 계획... 홍삼한방산업 활성화·발전방안 등 논의

전라북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을 기획, 실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14일 진안군홍삼약초센터에서 2022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사업추진 계획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서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서를 설명한 송대의 세무사(감사역임)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한 사업비 집행 및 재무회계 감사에 대해 부족한 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익산시 새마을회·김남수 씨, 산불피해 지원 성금 기탁

익산시 새마을회(회장 장오준)와 봉어뺑아저씨 김남수씨는 지난 14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안계현 동향면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있기에 동향면이 항상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 동향면 주민자치위원회, 하천변 환경 정화 나서

진안군 동향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심을보)는 15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김제 진봉면 복지기동대, 노후 형광등 교체 봉사

김제시 진봉면 복지기동대(대장 김양곤)는 15일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18세대를 방문하여 노후된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자아냈다.



장수소방서, 배진강 군에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 배진강(15, 무풍중학교)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무주경찰서, 이륜차 사고예방 위한 홍보활동 펼쳐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에서는 최근 기온상승과 영농철을 맞이하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주문이 증가하여 배달업소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순창지사 253-2404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67
팔복지사 253-6844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사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